

지방공사 서울의료원 부지 (체비지) 무상대부 동의

지방공사 서울의료원에서 무상대부로 사용중인 강남구 삼성동 171-1외 1필지의 대부기간이 2007. 8.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의료원이 중랑구 신내동으로 신축이전시 까지 무상대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 제16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의하여 동의한다

무상대부 현황

- 소 재 지 : 강남구 삼성동 171-1외 1필지
- 면 적 : 31,656.9㎡(대지, 약 9,576평)
- 대부기간 : 07.9.1 ~ 2012.8.31(5년)
- 대부기관 : 지방공사 서울의료원
- 재산소관 : 도시개발 특별회계

무상대부조건

- 대부계약서에 의거 대부하고자 함

관련근거

- 서울특별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 제15조, 제16조 제18조
- 동 시행규칙 제10조

<참 고 자 료>

무상대부 체비지 현황

소 재 지	지 목	면적(㎡)	소 유 자	비 고
합 계	2필지	31,656.9		
		9006.7	서울특별시	영동2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토지
		22,650.2		

※ 건물3동 33,059※: 서울의료원 소유

체비지 사용경위

- '77.7 : 시립중부, 남부병원을 시립강남병원으로 통합 신축 개원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부지 무상사용
- '91. 4 : 서울특별시체비지대부료등 부과징수조례 제정, 공포
- 동 조례 10조(권한위임)에 의거 부과징수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
- '91. 8 : 체비지 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(강남구청)
- '97. 4. : 강남병원 부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사항 처리방안(시방침)
- 변상금 부과 취소(체납액 176억원)
- '02. 10 : 강남병원부지(체비지) 무상대부 시의회 동의안 가결
- 대부기간 : 2002. 9. 1 ~ 2007. 8. 31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